

「한국은행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강원본부(이하“강원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절차 신설</p> <p>-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외명칭 삭제</p>
<p>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이하“강원영서 지역”이라 한다)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강원영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p><u><삭제></u></p>	<p>- 절차 제3조제1항에서 규정</p> <p>- 담당지역의 소재 업체 지원 규정 삭제</p>
<p>제3조(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을 구분하여 운용한다.</p>	<p><u><삭제></u></p>	<p>- 세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p>
<p>제4조(지원대상) ①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 실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 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8. 전입기업 9. 소재·부품 생산기업 10.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p>제2조(지원대상) ① 강원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p>- 조 올림 및 자구수정</p> <p>- 지원대상업체를 절차 제2조에서 규정</p>

<p>11. 명절·재해 자금 12.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강원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금원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5. 기타 강원본부장이 요청한 서류 	<p>-사후심사 관련 자료제출 목록 명시</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리 감면폭(30%) 2. 제출자료의 정확성(20%) 3. 대출취급실적 및 소명자료, 사후심사 자료 등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4.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규정 준수 여부(20%) 5. 제도 운영관련 협조도(10%) 	<p>- 평가관리 기준 마련</p>
<p>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강원영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제4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강원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강원본부장은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40% 이상을 전략지원한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제6항에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 현행 제5조제1항을 개정안 <별표1>로 이동</p> <p>- 상위 규정인 세칙과 절차에 명시하고 전략지원부문의 신용등급 제한 삭제</p>

<p>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 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강원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p> <p>② 강원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p> <p>③ 강원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p> <p>④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p> <p>⑤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 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4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 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삭제></p>	<p>- 현행 제6조제1항을 개정안 <별표1>로 이동</p> <p>- 상위 규정인 세칙과 절차에 명시하고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삭제</p>
<p>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p>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p> <p>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한다.</p> <p>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p> <p>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 제6조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p> <p>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p>	<p><삭제></p>	<p>- 현행 제7조제1항을 개정안 <별표1>로 이동</p> <p>- 상위 규정인 세칙과 절차에 명시</p>

<p>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 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p> <p>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삭제></p>	<p>- 지원일몰제 관련 내용은 절차 제8조에서 규정하고 예외조항은 삭제</p>
<p>제9조(명절·재해자금)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1호(명절·재해자금)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삭제></p>	<p>- 개정안 <별표1>로 이동</p>
<p>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 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p><삭제></p>	<p>- 세칙 제4조제2항, 절차 제3조제3항 및 개정안 제2조제2항에서 규정</p>
<p>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본부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p><삭제></p>	<p>- 자료제출 관련 내용은 절차제4조, 개정안 제3조에서 규정</p>

<p>3.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 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6. 기술신용정보 대출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p> <p>②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에 대해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은“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장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p>	<삭제>	
<p>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도 감축</p> <p>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p>	<삭제>	- 절차 제7조에 명시
<p>제14조(기타 사항) 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대상 대출금리에 대해 한국은행 지원에 따른 금리감면폭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 조 올림 및 절차 신설 반영
<신설>	부 칙 (2024. 3.)	- 부칙 신설 - 시행일 명시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¹⁾²⁾
A1	창업기업	(생략)
A2	벤처기업	
A3	혁신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제품임을 확인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 국제특허등록 업체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 ISO, JIS, UL, CE ³⁾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신용정보 대출을 받은 업체(대출금원장에 동 대출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 영업점장 명의 확인서 제출<별지 제6호 서식>) (기술력 평가 결과 우수 수준 이상(T1~T3등급)을 요건으로 함)
A4	녹색기업	(생략)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A6	추천기업	1) 춘천상공회의소, 원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별지 제5호 서식>)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별지 제5호 서식>)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강원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별표1-1> 강원지역 주력산업 참조) 또는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
A9	전입기업	- 강원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강원지역으로 이전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별표1-2> 참조)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생략)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별표1>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²⁾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1	창업기업	일반	(현행과 같음)
A2	벤처기업	일반	
A3	혁신기업	일반	-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제품임을 확인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 국제특허등록 업체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 ISO, JIS, UL, CE ³⁾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신용정보 대출을 받은 업체 (기술력 평가 결과 우수 수준 이상(T1~T3등급)을 요건으로 함)
A4	녹색기업	일반	(현행과 같음)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전략	
A6	추천기업 ⁴⁾	일반	1) 춘천상공회의소, 원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전략	- 강원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별표1-1> 강원지역 주력산업 참조) 또는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 ⁴⁾
A9	전입기업	일반	-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강원지역으로 이전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별표1-2> 참조)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일반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전략	(현행과 같음)
A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⁵⁾	일반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주: 1)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4) 유관기관 추천·선정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강원본부장이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지원부문 세분화 및 어구수정

- 지원부문 항목 추가

- 별지 서식 삭제

- 주식 추가, 별지 서식삭제

- 주식 추가

-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반영

- 법령개정 반영

- 주식 추가

- 유효기간 판단기준 설정

- 주된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 단서조항 삽입

- 현행 제9조를 각주 5에서 규정

<별표 1-1>

강원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1. 강원지역 주력산업

산업명	코드	산업분류명
천연물 바이오소재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422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세라믹 원료·소재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지털 헬스케어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

- 1) 강원도 선정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 2)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 3)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획득업체
- 4) 강원도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테크노파크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별표 1-1>

강원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1. 강원지역 주력산업¹⁾

산업명	코드	산업분류명
천연물 바이오소재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422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세라믹 원료·소재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지털 헬스케어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기준

2.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

- 1)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 2)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획득업체
- 4)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테크노파크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 주식 추가

- 근거기준 명시

-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반영

<별표 1-2>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분류기준
 (생략)

<별표 1-2>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분류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2>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10차)
주점업	I56211 일반유흥 주점업
	I56212 무도유흥 주점업
	I56213 생맥주 전문점
	I56219 기타 주점업
금융관련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L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L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M71101 변호사업
	M71102 변리사업
	M71201 공인회계사업
	M71202 세무사업
보건업	Q861 병원
	Q862 의원
도박장	S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S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S91291 무도장운영업
미용업	S96111 이용업
	S96112 두발미용업
	S96113 피부미용업
	S96119 기타미용업
안마업	S96122 마사지업

<별표2>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절차 <별표4>의 지원대상 제외업종을 반영하여 주차장운영업, 일반교습학원 등을 추가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위규 사유</th> <th style="width: 30%;">한도감축 배수</th> </tr> </thead> <tbody> <tr> <td>대기업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td> <td style="text-align: center;">2.5배 이내</td> </tr> <tr> <td>폐업업체에 대한 대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배 이내²⁾</td> </tr> <tr> <td>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배 이내</td> </tr> </tbody> </table> <p>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p>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²⁾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삭제>	-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 절차」 <별표4>에서 규정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²⁾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생략)</p>	<삭제>	- 대출취급실적 관련 보고서는 절차 제4조에서 규정								
<p><별지 제2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생략)</p>	<삭제>									
<p><별지 제3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생략)</p>	<삭제>									
<p><별지 제4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생략)</p>	<삭제>									
<p><별지 제5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 추천서 (생략)</p>	<삭제>	- 심사 전산화에 따라 삭제								
<p><별지 제6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신용정보 대출 확인서 (생략)</p>	<삭제>									